

거제시 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

거제시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보건소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01일

거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근거법령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(개방형직위)
나.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13조(보건소장)
다.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
라. 「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)

2. 임용분야 및 인원

근무예정부서	임용예정직위	임용예정직급	인원	임용기간	주요업무
보건소	보건소장	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(개방형 4호)	1명	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지역 의료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보건의료의 향상·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의료인 및 의료기관,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기타 예방접종, 지역주민 건강증진,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등

※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3. 임용신분

-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·승진·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
-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되고, 임기(계약기간)동안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

4. 응시자격

※ 적용 기준일 : 면접시험 최종일

가. 공통요건

- 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▶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형법」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**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**

-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-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2) 연령·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)

나. 자격요건

-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(필수요건) 중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구분		자격요건
필수요건		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
경력요건 (하나이상 해당자)	학력 기준	【박사학위 소지자】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
		【석사학위 이하 소지자】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
	자격증 기준	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경력 기준	【공무원】 -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-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	【민간인】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※ 관련분야 :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 관련분야(보건·식품위생·의료기술·의무·약무·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)

※ 근무경력은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에 한함.

5. 시험방법 및 일정

□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 : 형식요건 심사(서류전형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시험 : 적격성 심사(서류심사와 면접시험)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이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- 각 위원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(능력요건)을 검정
-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※ 직무수행 능력 요건 : 전문가적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변화관리 능력, 조직관리 능력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

□ 시험일정

공 고	응시원서 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 일자	최종합격자 발표
2026. 11. 1.(일) ~ 11. 8.(일)	2026. 11. 9.(월) ~ 11. 13.(금) ※ 기간 중 업무시간 내 (09:00~18:00)	2026. 11. 27.(금)	별도 공지	

※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개별통보함

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응시원서 교부 :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

나. 원서접수 : 2026. 11. 9.(월) ~ 11. 13.(금) 《5일간》

※ 기간 중 업무시간 내(09:00 ~ 18:00), 종식시간(12:00 ~ 13:00) 제외

다. 접 수 처

- 1) 방문접수 : 거제시청 행정과 인사팀(본관 2층)
- 2) 우편접수 :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(고현동) 거제시청 본관2층
행정과 인사팀(우편번호 53257)

라. 접수방법

- 1) 방문접수 :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하여 제출(대리 가능)
 - 거제시청 1층 납세과에서 응시수수료(거제시 수입증지)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※ 5급 이상 1만원
- 2) 우편접수 : 우편접수(등기)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하며, 응시

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

- ※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
- ※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증 표기
(예시) '개방형직위(보건소장) 응시원서 재증'

6. 보수수준

가. 보 수

- 1) 경력직공무원 :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
- 2) 임기제공무원 :

※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

(단위 : 천원)

임용직급	적용대상	상한액	하한액
개방형 4호	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	-	70,490천원

※ 연봉하한액의 130%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·능력·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

- 3) 복무 및 연봉 외 급여(직급 보조비,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, 시간외 근무수당 등)는 예산 범위 내에서 「지방공무원 수당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4)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
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나. 복무기준 :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름

7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- 1) 응시원서 1부 <별지 1호 서식>
- 2) 이력서 1부 <별지 2호 서식>
※ 단,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- 3)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3호 서식>
- 4)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4호 서식>
- 5) 최종 학력증명서 1부.
※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6) 주민등록초본 1부(전체 이력 기재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
- 7)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<별지 5호 서식>
- 8)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<별지 6호 서식>
- 9)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<별지 7호 서식>
- 10)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<별지 8호 서식>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1)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, 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)
- 2)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경력(재직)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·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
 - 경력(재직)증명서는 발행기관(기업체)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
 - 경력(재직)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·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

※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불인정

※ 경력(재직)증명서로 직무분야 증빙이 안 될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
- 3)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원본 또는 사본) 1부
 - 재직·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

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
 -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
- 4) 학위·연구논문 요약서, 저서, 특허등록,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
-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

※ 공통사항

-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전 6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하며,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,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되며,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
- 상 기재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

다. 유의사항

- 1)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2)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)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4)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5)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6)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- 7) 거제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8. 기타사항

- 가. 응시자가 없거나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,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, 응시자가 1인일 경우에는 7일 이상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나. 본 공고문은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다.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라.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제시 행정과 인사팀(☎ 055-639-3324)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☞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: 거제시 홈페이지(www.geoje.go.kr) 소통참여 ▶ 시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